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시설·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산림복지전문업의 명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사무실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심사 처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검토 및 결재 처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등록증 수령 신청인